

#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8,588,734	9,557,662
일반회계	272,548,874	8,176,466
특별회계	46,039,860	1,381,196
기타특별회계	46,039,860	1,381,1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9,711	39,891
수질개선특별회계	17,681,719	530,4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7,446	17,323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503,000	105,09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6,670	8,6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758,914	472,767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078,000	62,3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0,000	21,6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104,400	123,132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70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19,07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6 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